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378호 정선군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 1
- 정선군 조례 제2379호 정선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5
- 정선군 조례 제2380호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1
- 정선군 조례 제2381호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15
- 정선군 조례 제2382호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26
- 정선군 조례 제2383호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 정선군 조례 제2384호 정선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 57
- 정선군 조례 제2385호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 61
- 정선군 조례 제2386호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71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40호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97

조 례

정선군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7월 31일

정선군 조례 제2378호

정선군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사무위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종 법령으로 규정된 정선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 기관에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권자)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써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 외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 2.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 3.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②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용권을 정선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 및 감독)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임능력 여부 점검
2. 필요한 예산 배정
3. 업무처리요령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임기관을 지휘·감독하며,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군수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르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위임사무) 군수가 정선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해야 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거나 처리중인 위임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5조 관련)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2.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 입산신고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4.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및 감액결정	정선군 재무회규칙 제32조, 제33조
5. 지방세 체납금 징수 및 지방세 관련 제증명 등 민원처리	지방세 기본법 제6조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제5조
6. 불용품 매각처리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제17조
7.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8. 대마취급자(대마재배자) 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9. 건축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수리 및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고 및 용도변경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 건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의 수리 - 건축법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항,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의 조치에 따른 시정명령·고발조치 및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82조제3항
10. 건축물의 철거, 멸실의 신고	건축법 제36조
11.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
12. 먹는물 공동시설 운영관리	먹는물 관리법 제8조
13.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22조

개 정 이 유

- 지방의회사무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3조의2 별표7의2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과장에 위임한다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개정(‘13.7.13)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위임사무(안 제5조)

정선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7월 31일

정선군 조례 제2379호

정선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정선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제정(1985. 03. 20 조례 제0976호)
- 개정(1985. 10. 31 조례 제1006호)
- 개정(1999. 01. 18 조례 제1749호)
- (일부개정) 2000.01.18 조례 제1810호
- (일부개정) 2009.07.14 조례 제2172호
- (일부개정) 2012.08.01 조례 제230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0.01.18>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09.07.14>

제3조(임용권자) ①군수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01.18>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08.01>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2.08.01>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09.07.14>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

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강원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08.01>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2.08.01>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01.18>

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0.01.18>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 <삭제 1999.01.18 조례제1749호>

④ <삭제 1999.01.18 조례제1749호>

제8조의2(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08.01>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2.08.01>

1. <개정 1999.01.18, 삭제 2012.08.01>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개정 2012.08.01>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9.07.14>

<본조제목개정 2009.07.14>

제11조의2 삭제<2009.07.14>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신설 1999.01.18 조례제1749호>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9.01.18 조례제1749호><개정 2009.07.1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신설 1999.01.18 조례제1749호><개정 2009.07.14>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4, 2012.08.01>

<본조제목개정 2009.07.14>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8.01>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및 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것으로 본다.

제3조(근무상한연령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 연령이 초과된자는 1985년 12월 31일에 근무상한 연령이 달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 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경우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1985년 11월 30일까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 연령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5.10.31. 조례 제1006호>

부 칙(1985.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

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9.19. 법률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12월31일에 해당하는 자와 1999년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6월30일에, 2000년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9월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부 칙(200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09. 07. 14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08. 01 조례 제2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폐 지 이 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 직종개편('13. 12. 12. 시행)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정선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7월 31일

정선군 조례 제2380호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화합 및 통합 증진을 위하여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여성, 농업인, 학계, 경제, 종교, 문화, 환경, 복지 분야 등 각계·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서기는 행정담당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합의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범(凡)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

2. 군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의 확산
3. 지역사회 갈등의 예방 및 해결
4.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통한 방안 제시
5. 그 밖에 군민통합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 사회적 지탄대상이 되어 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5. 위촉될 때의 자격을 그 이후 상실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전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예산계상 등)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행

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 정 이 유

- 정선군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화합 및 통합 증진과 지역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자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범 군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에 노력하고자 하는 것임.

주 요 내 용

-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여성, 농업인, 학계, 경제, 종교, 문화, 환경, 복지 분야 등 각계·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안 제3조제3항)
- 위원회는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조정을 통한 방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안 제4조)
-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행정적 조치가 가능(안 제9조)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7월 31일

정선군 조례 제2381호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를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를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하고, “자동차로서”를 “자동차로써”로, “감면신청 하는”을 “감면 신청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2천시시”를 “2,000cc”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 자동차관리법 ·”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으로, “군수”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재보호구역안”을 “문화재 보호구역 안”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를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50을,”를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로,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를 “세액을 감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면제하고,”를 “감면하고,”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2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당해 공장관리기관”을 “해당 공장 관리기관”으로 각각 한다.

제12조 중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후단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를 “영 제127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시한을 준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생략)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

1. (현행과 같음)

가.----- 2,000cc-----

나.----- 「자동차관리법」-----

-----.

다. 「자동차관리법」-----

2. ~ 4. (현행과 같음)

② -----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 . 제1항-----

1. 「자동차관리법」 -----

2. 천재지변-----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
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
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
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
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
동차

제3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
제)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
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
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
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
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
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생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
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
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
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
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

4. 「관세법」-----

제3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
제) -----

-- 문화재 보호구역 안---

-----.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감면대상

④ (생 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생 략)

제7조(정선군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서 공장(「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④ (현행과 같음)

1. -----

----- 감면하
고,-----

-----.

2. (현행과 같음)

제7조(정선군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

----- 해당 -----

경감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장관리기관 또는 당해 공장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3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선군 군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사유 없이 -----

 -----2년 이상-----
 -----해당 공장 관리기관 -- 해당 공장 관리기관-----

 -----.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준용한다.

제13조(감면 신청) ①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제 126조제1항-----

 -----.

<p>② (생 략)</p> <p>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 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u>「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u> <u>48조를</u> 준용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 ----- ----- ----- ----- ----- <u>영 제127조</u> ----- -----.</p>
---	---

개 정 이 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24425호, 2014.3.23 시행)에 따라 강원도 시군간 균형 유지를 위해 “시군합동집무 조례안(도세정과-5951, 2014.5.14)”을 반영하여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와 부합하게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중복감면 배제 적용을 구체화(안 제1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안 제13조, 제14조)
- 띄어쓰기 등 용어 정리(제명 등)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7월 31일

정선군 조례 제2382호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를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보통우편”을 각각 “일반우편”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우편물접수인”을 “통신일부인”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을 “(연대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대납세의무자”를 각각 “연대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차납세의무”를 “제2차 납세의무”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도세와 군세의 징수 순위) 지방세는 도세, 군세의 순서로 징수하고, 도세나 군세 중에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써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하기 10일 전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무관청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를 “(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의 경우에만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징수유예등”을 “징수유예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군세징수권”을 “군세 징수권”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탁하거나 또는 군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군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를 “군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군세환급금통지서”를 각각 “군세환급금 통지서”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징수유예등의 신청)”을 “(징수유예 등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징수유예등을”을 “징수유예 등을”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처리)”를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수유예등신청서”를 “징수유예 등 신청서”로, “징수유예등의”를 “징수유예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수유예등을”을 “징수유예 등을”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징수유예등의 취소)”를 “(징수유예 등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징수유예등을”을 “징수유예 등을”로 한다.

제24조제2호 중 “징수유예등을”을 “징수유예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경우로서”를 “경우로”로, “군세채권확보”를 “군세 채권확보”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문서에 의하여”를 “문서로”로 한다.

제29조제3항 단서 중 “계속 할 수 있다.”를 “계속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재단채권으로서”를 “재단채권으로”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재산 중에서”를 “재산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매대금으로서”를 “공매대금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것으로서”를 “것으로”로, “직접매각”을 “직접매각”으로 한다.

제38조제2호 중 “같은 조 제5항”을 “영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규정하는”을 “따른”으로 하고, “재산으로서”를 “재산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채납처분중지기간”을 “채납처분 중지기간”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징수유예등”을 “징수유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수정요구조건”을 “수정 요구조건”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중 “회생계획진행 중에”를 “회생계획 진행중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이에 즉시”를 “즉시”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등)”을 “(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징수유예등을”를 “징수유예 등을”로, “징수유예등에”를 “징수유예 등에”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물적 납세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운영등에”를 “운영 등에”로 한다.

제5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49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 제출을 위하여 전문가·참고인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정선군 각종 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자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해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
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 군세 기본조례</u>	<u>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u>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 른 <u>보통우편</u> 및 등기우편(배 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 - <u>일반우편</u> ----- ----- -.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생 략)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 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 년 부과고지하는 군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 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u>보통우 편</u>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 ----- ----- ----- ---- <u>일반우편</u>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보통우편 송달부) <u>보통우 편</u> 의 방법으로 법 제30조제6항 에 따른 <u>보통우편</u> 송달부는 규 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u>우편물접수 인</u> 을 날인받아 보관하여야 한 다.	제9조(보통우편 송달부) <u>일반우 편</u> ----- -- <u>일반우편</u> ----- ----- <u>통신일부인</u> ----- -----.
제10조(<u>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u>) ① 연대납	제10조(<u>연대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u>) ① 연대

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 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체납군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압류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도세와 군세의 징수 순위) 지방세는 도세, 군세의 순서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영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 연대 납세의무자 ----- 연대 납세의무자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

----- 제2차 납세의무 -----
-----.

제12조(도세와 군세의 징수 순위) 지방세는 도세, 군세의 순서로 징수하고, 도세나 군세 중에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제1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생략)

- 1. (생략)
- 2.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 (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③ (생략)

④ (생략)

- 1. (생략)
- 2. 징수유예등 사유와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3. 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16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군금고에 예탁할 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하기 10일 전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무관청이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
(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의 경우에 한한다)에-----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징수유예 등 -----

3. 군세 징수권의-----

제1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

----- 군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있다. 다만, 군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0조(군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군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에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주소지를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1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법 제80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등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군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군세환급금 통지서-----

-----.

② ----- 군세환급금 통지서-----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
----- 징수유예 등을 ----
-----.

제22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① -----
----- 징수유예 등 신청서-----

----- 징수유예 등의-----

후에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징수유예등을 한 때에는 징수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징수유예등의 취소) 법 제 84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군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생략)

- 1. (생략)
-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군금고에 보관

-----.

② ----- 징수유예 등을 -----

-.

제23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
----- 징수유예 등을 -----

-----.

-----.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
----- 징수유예 등을 -----
- 3. -----
----- 경우로 ----- 군세 채권 확보-----

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수색) ①·② (생략)

③ 수색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생략)

제3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생략)

1.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생략)

제36조(공매) ① 압류한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중에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및 무체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

----- 문서로-----
-----.

제29조(수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계
속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현행과 같음)

1. -----

----- 재단채권
으로 -----
-----.

2. (현행과 같음)

제36조(공매) ① -----
----- 재산중에서

-----.

② -----

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
서 그 매각 추산가격이 채납처
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채납처분을 중지하여
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채
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0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생략)

1. (생략)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채납처분중지기간 중 균세를
징수하여도 해당 법인의 회생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채납처분
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의 신
청

3. (생략)

제42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회생
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3

----- 재산으로-----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지체
없이 -----
-----.

제40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채납처분 중지기간 -----

3. (현행과 같음)

제42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

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
등에 관한 동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② 세무공무원은 법원의 동의를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
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
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
부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수정된 회생계획
안에 수정요구조건이 반영되었
는지의 여부를 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전까지 확인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3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회생계획진행 중에 새로이
채납이 발생한 경우

③ (생략)

1.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군세채권이 있을 경우

----- 징수유예 등-----

1. ~ 3. (현행과 같음)

② -----

----- 수정 요구조건-----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회생계획 진행중에 -----

③ (현행과 같음)

1. -----

에는 이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2. (생략)

제44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되면 동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체납액은 법령 및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 (생략)

1. (생략)

2.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군세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군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 즉시-----
-.

2. (현행과 같음)

제44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 -----

----- 징수유예 등을 -----

징수유예 등에-----
-----.

제45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물적 납세의무자-----

-----.

② -----

----- 가
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위원의 해촉) (생 략)

1.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 <신 설>

-----.

제49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
과 같음)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위원의 해촉) (현행과같
음)

1. -----
----- 경우
2. -----
경우
3. -----
----- 경우
4. ----- 경우

제5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49조제1항에 따라 의
견을 듣거나 관계자료 제출을
위하여 전문가·참고인 등이 위
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정선군
각종 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
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 정 이 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 제12152호, 2014.1.1 시행)에 따라 강원도 시군간 균형유지를 위해 “시군합동집무 조례안(도세정과-5951, ‘14.5.14)”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현행 법령·조례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2조, 제8조, 제9조)
 -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 정비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용어 개정(안 제16조)
 - 채권 소멸시효로 교부할 금전이 군 금고에 귀속될 수 있도록 개정
- 위원회 출석시 수당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가능 조문 신설(안 제52조)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7월 31일

정선군 조례 제2383호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지방세법」,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를 “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를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8조제1항의 주민세 균등분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정선군에 주소를 둔 개인: 5,000원
- 2. 정선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법 제78조제1항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 제6조제3호를 신설한다.
- 3. 정선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

제7조제1항 중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를 “같은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군수”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음”을 “㉠ 다음”으로 한다.

제9조 앞의 “제4장 지방소득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앞의 “제1절 소득분”을 “제3절 종업원분”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 앞의 “제2절 종업원분”을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한다.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같은 조 제3항까지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의 각 호 외의 본문 중 “법 제111조 제1항에”를 “법 제111조제3항에”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를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군수가”를 “② 군수가”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하고, 본문 중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를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을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으로, “부과·징수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후단 중 “「강원도 도세 조례」”를 “다만, 「강원도 도세 조례」”로 각각 한다.

제18조 후단 중 “「강원도 도세 조례」”를 “다만, 「강원도 도세 조례」”로 한다.

제19조 후단 중 “「강원도 도세 조례」”를 “다만, 「강원도 도세 조례」”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②군수가”를 “② 군수가”로 한다.

제24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를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중인 군세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 「정선군군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제2장 담배소비세			제2장 담배소비세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장 주민세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의 주민세 균등분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5,000원

나.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 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신 설>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생 략)

제8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

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

1. 정선군에 주소를 둔 개인: 5,000원

2. 정선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법 제78조 제1항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

3. 정선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①-----

-----같은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신고의무) ① -----

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

제9조(세율)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2절 종업원분

제10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5로 한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② 다음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삭 제>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
 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
 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
 경된 때

<신 설>

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
 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
 된 경우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
 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같은 조 제3항까지의 표준세율
 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 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3항에
-----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1. ~ 5. <삭 제>

제5장 재산세

제12조(세율) 법 제111조 제1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100분의 2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2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 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
천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
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

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
 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
 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지방
 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97조에 따른 공장용 건
 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
 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 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
 천분의 3 5. 항공기 : 과세표준
 의 1천분의 3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원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략)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원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원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

원도 도세 조례」 -----

1. ~ 7.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강원도 도세 조례」 ----

-.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

----- . 다만, 「강원도 도세 조례」 -----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초과	24원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

-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1. ~ 6. <삭 제>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이하	45,0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6. 3륜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개 정 이 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12153호, 2014.1.1 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율 규정등을 강원도 시군간 균형유지를 위해 “시군합동집무 조례안 (도세정과 - 5951, 2014.5.14)”을 반영하여 정선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의무 규정 신설(안 제10조)
-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적용(안 제11조)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14조, 제15조)
- 재산세(주택분) 일시납 과세액조정(5만원→10만원)(안 제16조)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적용(안 제6조, 제9조, 제12조, 제24조)

정선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7월 31일

정선군 조례 제2384호

정선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

정선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제정(1981. 02. 23 조례 제0661호)

개정(1989. 01. 18 조례 제118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은행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과 그 공동사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상시종업원 100인 이하인 업체)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우선 지원한다.
 - 가. 제조업체로서 공업지역이나 공단으로 이전하는 업체
 - 나. 토산품 생산업체로서 보전육성의 가치가 있거나 양산이 가능한 업체

제3조(융자추천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4조(심사)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의 심사기능은 정선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행한다.

제 5조(융자추천한도액) 융자추천한도액은 업체당 20,000천원 이내로 한다.

제 6조(보전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이자보전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 ①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의 이자납부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8조(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실시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매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환수조치등)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교부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용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관리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1.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 지 이 유

- 본 조례는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은행 용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균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1981.02.23일 제정되었으나, 최근 본 조례에 근거한 용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업무를 추진한 적이 없으며, 동일한 취지의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용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 중소기업 육성 용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7월 31일

정선군 조례 제2385호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기업 및 민간 투자 자본의 효율적 유치와 지방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에 따른 지원으로 정선군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이전기업과 투자양해 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시·도(도 외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던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군 권역으로 각각 전부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은 그 기업의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 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로 한다.
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업의 부설 연

구소를 말한다.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일반·도시첨단산업 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7. “집단지화”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8. “보조금”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전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가. 부지매입보조금: 용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 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
 - 나. 투자보조금: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 이 경우 근로 환경개선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로 한다.
 - 다. 본사이전보조금: 함께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의 임금
 - 라. 고용보조금: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
 - 마. 교육훈련보조금: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
 - 바.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 사. 물류보조금: 도내에서 공장제품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할 경우 그 비용
 - 아.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전기사업법」 제16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의 공급약관 제67조에 따른 전기요금
9. “신설”이란 이전기업이 군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군내 기존기업은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군 권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0. “증설”이란 군내에서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1. “창업”이란 군내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2. “수도권 인접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도권과 인접한 광역 시·도의 시·군을 말한다. 다만, 제13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3. “폐광지역”이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도내에 탄광이 소재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서 폐광 또는 석탄생산의 감축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4. “폐광지역 진흥지구”란 폐특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15. “폐광지역 투자기업”이란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 국내복귀기업 또는 신설·증설기업(이하 “이전기업 등”이라 한다) 중 공장을 설치한 기업을 말한다.
 16.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올림픽특구”라 한다)”이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7. “주력업종”이란 군수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제2장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제3조(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하여 본사 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군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세제감면) 군수는 이전기업과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종 세제감면을 할 수 있다.

제6조(용지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과 창업기업 등이 군 권역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망기업 및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7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요청) ① 군수는 이전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도지사에게 지정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 저조지역
3. 올림픽특구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촉진지구 지정요건 및 그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이전·신설 또는 창업에 한정한다.

② 제1항 따른 중·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국고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① 군수는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국가, 도 또는 군으로부터 동일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장 폐광지역 투자에 대한 지원

제10조(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폐광지역 투자기업 중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업, 지식 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또는 고도기술 수반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본사이전보조금
2. 설비투자보조금
3. 부지매입보조금

4. 임대료보조금
 5. 고용보조금
 6. 교육훈련보조금
 7. 폐광지역 투자기업이 지원받은 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이자에 대한 재정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차액에 대하여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금
 8. 물류보조금
 9.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서 근로자 출·퇴근에 따른 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교통비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재원특례 및 중복지원의 금지) ① 폐광지역의 투자유치보조금은 군수가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교부받는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때에는 다른 보조금 또는 기금 등을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4장 관광사업 투자유치 지원

제12조(관광사업 투자비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신규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투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5장 투자유치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투자유치활동의 효율적·체계적 추진과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하여 정선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수가 투자유치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기관·단체의 임원
 2. 해당 분야의 기술전문가 또는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정선군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4.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그가 속한 법인·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제15조(기능) ① 위원회는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정책에 대한 자문
2. 기업, 투자기관 등을 방문하여 홍보활동 전개
3.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 심의
4. 대상 기업의 적정성 검토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5. 공로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심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제18조(부담금의 분담 등) ① 군수는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그 부담금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비율은 도의 보조금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19조(신청 및 지원) ①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보조금 지급을 위한 타당성 분석평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서에 따르되, 군비 지원대상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신청할 때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해야 한다.

제20조(지원기업의 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최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기피한 사유로 그러할 수 없어 군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해야 한다. 다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최초 보조금의 지급일부터 3년(국내복귀기업은 4년으로 한다)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4. 군수가 제21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게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투자 이행기간 전(全)기간을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2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보조 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해야 한다.

제22조(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①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의 사업개시일부터 의무사업 이행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3. 본사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한 경우
4. 이전기업과 창업기업이 지원받아 매입 또는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 후 처분한 경우

나. 사용을 중지하거나 도 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5.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다.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제2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의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되, 그 기준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표창 및 성과금 지급) ①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일정기간 총매출액, 상시고용인원의 임금지급, 물류비용 등에 관한 입증자료(국세청 등 과세자료를 말한다)를 확인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제23조의 표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 「정선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기업 및 투자유치에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보조금 등과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제3조(적용례) 제21조·제22조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유치하는 기업 및 투자부터 적용한다.

개 정 이 유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2014. 3. 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73호(2014. 4. 16.) 등에 따라 보조금 부담 비율의 정비 등 현실에 맞는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안 제2조)
-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보조금 지원, 세제감면, 용지지원 등)을 규정(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 폐광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지원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 투자유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부담금의 분담, 보조금신청 및 지원, 지원기업의 의무와 사후관리, 지원 취소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표창·성과금지급 등을 규정(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7월 31일

정선군 조례 제2386호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 재난 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 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 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 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 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기능 및 구성

제3조(대책본부 기능)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 대책본부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하며 재난안전종합상황실장을 겸임한다.
4. 담당관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군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본부장의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통제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운영 및 근무체계

제6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재난안전종합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임무는 자연재난은 별표 5,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라. 대책본부 구성 체계도는 별표 7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이하 “위기관리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안전종합상황실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때에는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은 대책본부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의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대책본부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파견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1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읍·면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
 4. 그 밖에 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현장상황관리관을 포함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의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4조(위기관리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강원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제17조(구성·운영 등) ① 대책본부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 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군의 실·과·소·단장
2.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대책본부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담당급 공무원으로 한다.
- ④ 본부장은 대책본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한다.
- ⑤ 대책본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소집 등) ① 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 ②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본부장은 회의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⑤ 대책본부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신고서를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피해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읍·면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의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문서관리)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21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8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에서 조치하였거나 조치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중앙부처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정선군 주관부서
교육부	1.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관광부	2.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3.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관광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농림축산식품부	4 가축 질병	농업축산과
산업통상자원부	5.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6. 전력 사고	지역경제과
보건복지부	7. 감염병 재난 8. 보건의료 사고	보 건 소
환경부	9.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10. 황사 11.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생태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고용노동부	12.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지역경제과
국토교통부	13. 도로터널 사고 14. 육상화물운송 사고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문화재청	15.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산림청	16. 산불 17. 산사태	산림정책과
소방방재청	18. 화재 19.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20. 풍수해 21. 지진 22. 낙뢰 23. 가뭄	안전건설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정선군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2]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담 당 관	재난안전종합상황실장
실 무 반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소속 공무원과 각 부서 파견 인력

- 비고: 1. 준비단계는 정선군 소속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지역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재난안전종합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 비상 1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주의보 발령시

나. 태풍 : 예비특보 발효시

2. 실무반 편성 : 6명+ α

통제관 (재난업무담당과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 (재난수습주관부서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6명+α	
상황관리 총괄반	반장(1)	담당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진파, 재난상황관리 (5+α)	- 재난상황관리반(5) 재난상황실(1) : 상황근무자 자연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2) -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영월기상대 자체상황근무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		기획감사실(α), 주민생활지원과(α), 자치행정과(α), 세무회계과(α), 생태환경과(α), 농업축산과(α), 산림정책과(α), 문화관광과(α), 지역경제과(α), 안전건설과(α), 도시건축과(α), 동계올림픽지원단(α), 농업기술센터(α), 보건소(α), 상하수도사업소(α)

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건설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경보 발령시, 국지적 피해 예상(발생)시

나. 태풍 :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국지적 피해 예상(발생)시

2. 실무반 편성: 14명+a+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 제 관 (재난업무담당과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부서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14명+a+β	
상황관리 총괄반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6+a)	- 재난상황관리반(6+a) 재난상황실(1) 재난 주관부서(2) 정선경찰서(1), 정선소방서(1), 영월기상대(1)
	상황보고서 작성 (3+a)	-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3+a)	-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지역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행정지원반 (1+a)	- 자치행정과 직원(1+a) ※ 자원봉사자, 상황근무자 등 행정지원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a)	기획감사실(a), 주민생활지원과(a), 자치행정과(a), 세무회계과(a), 생태환경과(a), 농업축산과(a), 산림정책과(a), 문화관광과(a), 지역경제과(a), 안전건설과(a), 도시건축과(a), 동계올림픽지원단(a), 농업기술센터(a), 보건소(a), 상하수도사업소(a)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정선 국토관리사무소, 한국전력 공사 정선지점, KT 정선지사, 정선 국유림관리소)	

다. 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반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경보 발령 시, 대규모 피해 예상(발생)시

나. 태풍 : 태풍경보 발령 시, 대규모 피해 예상(발생)시

2. 실무반 편성 : 19명+a+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제관 (재난업무담당과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 (재난수습주관부서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19명+a+β	
상황관리 총괄반	반장(1)	담당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7+a)	- 재난상황관리반(7+a) 재난상황실(2) 재난 주관부서(2) 정선경찰서(1), 정선소방서(1), 영월기상대(1)
	상황보고서 작성 (3+a)	-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7+a)	- 재난 총괄부서(2), 주관부서(5)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지역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행정지원반 (1+a)	- 자치행정과 직원(1+a) ※ 자원봉사자, 상황근무자 등 행정지원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a)	기획감사실(a), 주민생활지원과(a), 자치행정과(a), 세무회계과(a), 생태환경과(a), 농업축산과(a), 산림정책과(a), 문화관광과(a), 지역경제과(a), 안전건설과(a), 도시건축과(a), 동계올림픽지원단(a), 농업기술센터(a), 보건소(a), 상하수도사업소(a)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정선 국토관리사무소, 한국전력 공사 정선지점, KT 정선지사, 정선 국유림관리소)	

다. 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반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

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중앙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통제관 (재난업무담당과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 (재난수습주관부서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11명+a+β	
상황관리 총괄반	반장(1)	담당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6+a)	- 재난상황관리반(6+a) 재난상황실 (2) : 상황근무자 사회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2)
	상황보고서 작성 (3+a)	- 사회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행정지원반 (1+a)	- 자치행정과 직원(1+a) ※ 자원봉사자, 상황근무자 등 행정지원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a)		기획감사실(a), 주민생활지원과(a), 자치행정과(a), 세무회계과(a), 생태환경과(a), 농업축산과(a), 산림정책과(a), 문화관광과(a), 지역경제과(a), 안전건설과(a), 도시건축과(a), 동계올림픽지원단(a), 농업기술센터(a), 보건소(a), 상하수도사업소(a)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 국토관리사무소,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점, KT 정선지사),

※ 비고 :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자연재난 실무반 임무(제6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통제관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상황 관 리 총 괄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4. TV 방송 모니터링 5.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6.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재난수습 주관 및 총괄부서
	상황보고서 작성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인명피해 상황관리 6. 재산피해 상황관리 7.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8.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9. TV 방송 모니터링 10. 민심동향, 미답사례 등 확인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2.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및 소방방재청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3. 비상근무 단계 결정 4.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5.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6.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7.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8.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9.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0.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행정지원	자원봉사자, 상황근무자 등 행정지원	
긴급생활 안정지원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주민생활 지 원 과

구 분	담 당 업 무	비 고
재난현장 환경정비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생 태 환경과
긴급 통신지원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자 치 행정과
시설 응급복구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해당부서
에너지 기능복구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지 역 정제과
재난수습 홍보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기 획 감사실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1.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2. 국가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안 전 건설과
교통대책	1. 재난발생지역 통제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육상 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수송차량 지원 3. 긴급수송 지원	도 시 건축과
의료·방역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및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소
자원봉사관리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자 치 행정과
사회질서유지	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2.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3.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4.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자 치 행정과
구조·구급	1. 재난지역 구조, 구급 지원 2.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보건소
유관기관	자연재난 관리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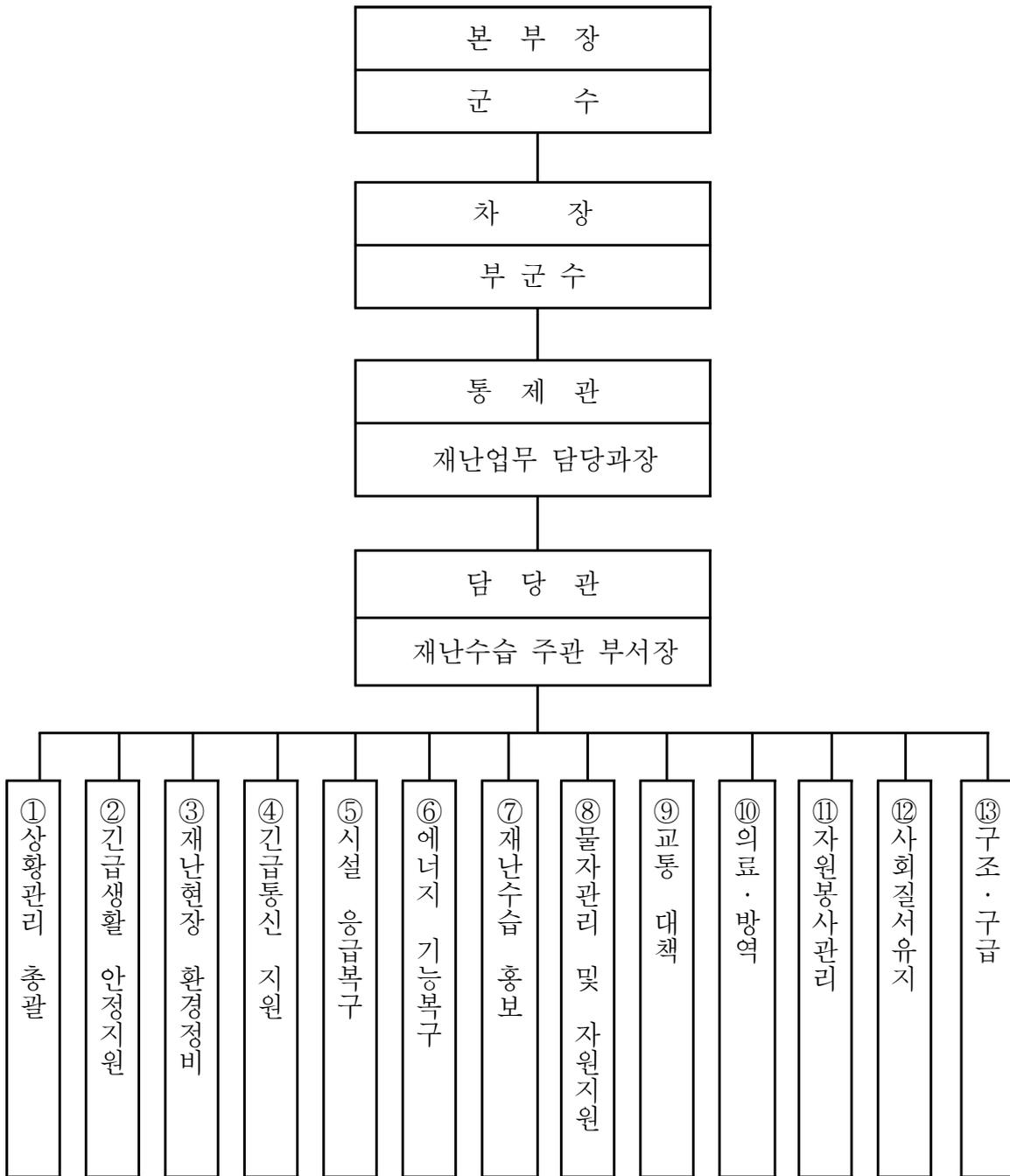
[별표 6]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임무(제6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구 분	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세부 기능	주요 업무와 역할
상황총괄반	상황보고서 작성팀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상황관리팀 1. 재난상황관리 기능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행정지원팀	○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상황근무자 명령 ○ 자원봉사자 등 지원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협업 기능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3. 긴급통신 지원기능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4. 피해시설 응급복구 기능	○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7. 교통대책 기능	○ 교통 두절구간(도로) 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제독 및 기동방역·제독반 편성·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11. 사회질서 유지 기능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12. 재난수습 홍보 기능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13. 재난지역 수색, 구조, 구급 기능	○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별표 7]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체계도(제6조제1항제2호라목 관련)



※ 협업기능 및 실무반은 재난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

[별표 8]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21조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통제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현장관리관 파견		○	
		유관기관 파견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발령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피해조사 및 복구	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대책본부 회의	회의소집		○	
		회의결과 통보		○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 내용	피해 발생위치:
	피해 시설명:
	피해 물량: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수 또는 읍·면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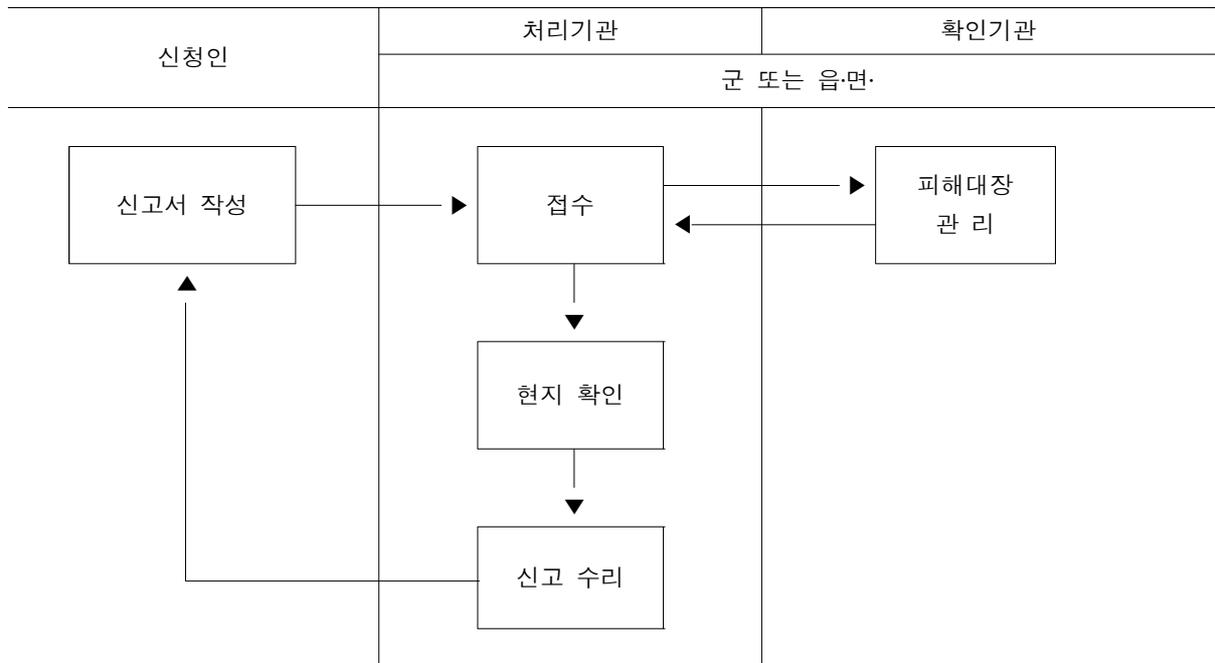
첨부서류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관리번호:]

피해대장

확 인 자	[군 직	성명	(인)
]	읍면 직	성명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인)
조사자		직	성명	(인)

1 총괄현황

구 분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	천원

2 피해·복구내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③ 피해현황 사진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

개 정 이 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재난 유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안 제2조)
-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등 규정(안 제3조~제5조)
-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 규정(안 제6조~제10조)
 -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 운영
- 재난상황의 관리(안 제11조~제16조)
 - 대책본부 지휘, 재난현장 조치 및 대응지원 등
-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 규정(안 제17조~제21조)
 - 개정된 상위법령에 근거한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 구성·운영 내용 반영

규 칙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7월 31일

정선군 규칙 제1240호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①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2. 타 시·도에서 창업하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3. 이전기업의 상시고용 인원이 이전 전·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
4. 집단화 이전의 경우 개별기업의 최소 상시고용 인원이 이전 전·후 각 10명 이상인 기업

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폐광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2.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지역선도산업 또는 특화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장을 폐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이전 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장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제3조(본사 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의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3조 및 제10조에 따른 이전기업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 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1, 별표 2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투자보조금 지원은 유형별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5조(부지매입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산업단지(농공단지를 포함한다)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 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 별표 2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④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6조(임대료보조금)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임대료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임대료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군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군내 기존기업이 신설·증설에 따른 부지매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별표 7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요청)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유치 저조지역”이란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률이 5퍼센트 미만이고, 기업이전 양해각서 체결실적 등이 저조한 지역을 의미한다.

③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분양공고 후 2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지구 지정일 현재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이외의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도 내·외 기업이 투자촉진지구 내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④ 군수는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

⑤ 군수는 투자촉진지구에 이전·신설·증설한 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건을 다른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신청시기는 이전·신설·증설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해당 공장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동안 최고 2억원 한도
 2. 물류보조금: 해당 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동안 최고 2억원 한도
 3.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설비운행을 위한 전기요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1년동안 최고 2억원 한도
- ⑥ 제5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범위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에게 별표 3과 같이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총 투자규모의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기업마다 최고 100억원(단, 창업은 6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00억원(단, 창업은 6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3조에 따른 본사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보조금 지원여부와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기업은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 폐광지역 투자에 대한 지원

제10조(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표 5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사 이전보조금은 기업의 1일 상시고용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200만원씩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비투자보조금은 설비투자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설비투자 보조금에는 부대물품 구입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지매입보조금은 부지매입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 비용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4.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료보조금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이자비용을 합한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 계약서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5년까지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가. 임대료보조금은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 나. 가목에서 정한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신청일 기준 3년 국고채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5.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여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70만원까지 최고 10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 신규 상시고용인원은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의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6. 조례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여 신규 채용 후 위탁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까지 최고 5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조례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차차액보전금은 변동금리 기준으로 3퍼센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차차액을 융자기간동안 3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8. 조례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물류보조금은 공장 가동시점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품운송비의 50퍼센트를 반기별로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 ② 조례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비보조금은 산업단지(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로써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업체로 한하며,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의 신청) ①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을 지원받 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종 보조금은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제5호와 제6호 및 제8호의 보조금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통비보조금은 공장등록 후 가동 1년 이후부터 매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관광사업 투자유치 지원

제12조(관광사업 투자비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비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 한 차례에 한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

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

나. 군수가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 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

2. 도지사 및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도와 군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6의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장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13조(부담금 분담 등)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도와 군의 부담금의 분담비율과 보조금의 세부지급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단, 별표 5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은 도와 군의 부담금 분담비율을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 기업이전 수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경우 및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분담비율을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제14조(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단, 별지 제7호서식을 제외한다) 중 해당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업을 입증하는 서류
2. 군수가 기업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
3. 도 및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려는 지원 요청액 등
4.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업계획서
5.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이행각서
6. 기업의 재무관련 자료 및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계획
7.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군수의 검토의견
8.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분석평가서
9. 정선군 기업투자유치위원회 심의의결서

제15조(사후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군수는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 등에게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환수) ① 군수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1.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지원: 다음 각 목 중 큰 금액
 - 가. 매각대금(단,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 사업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 감평가 등 기준)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이하 “이자”라 한다)
 - 나. 보조금 전액과 이자
2. 토지임대에 따른 입지지원: 보조금 전액과 이자
3. 투자지원: 보조금 전액과 이자
4. 교육훈련지원: 부족한 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의무사업 이행기간 동안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타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미 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 인원을 완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미달률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할 수 있

다.

1.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text{투자계획금액} - \text{실투자금액}) / \text{투자계획금액} \times 100$
2. 계획한 상시고용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text{계획한 상시고용 인원} - \text{정산보고시의 상시고용 인원}) / \text{계획한 상시고용 인원} \times 100$
-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업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보다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많은 경우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⑤ 군수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결정과 환수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기업 및 투자유치에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 유치하는 기업 및 투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타 시·도 이전기업 지원기준(제3조~제6조, 제13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계	도비	군비
부지매입 보조금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또는 20억원이상 투자	부지매입비×15%	30	15	15
	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 또는 200억원이상 투자	부지매입비×40%	60	30	30
임대료 보조금	지원기간은 5년 이내	임대료×30%	10	5	5
투자보조금	대 기 업	투자비×10%	30	15	15
	중견기업	투자비×20%			
	중소기업	투자비×30%			
본사이전 보조금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 시,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		10	5	5

주1)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로 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수도권이전 기업 중 대기업을의 경우 타 시·도 이전기업 지원기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주3) 기업투자촉진지구(투자유치저조지역, 올림픽 특구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비율 한도 상향하되,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주4) 근로환경개선시설 추가지원 : 설비투자금액의 10%범위내에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액의 3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별표 2]

국고지원대상기업 지원한도액(제4조~제5조, 제13조 관련)

구분	지원대상	유형별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계	국비	도비	군비
수도권 이전 기업	부지매입 보조금	수도권 인접지역	중소기업	부지매입비×10%	120	60	30	30
			중견기업	부지매입비×15%				
		일반지역	중소기업	부지매입비×35%				
			중견기업	부지매입비×25%				
	지원우대지역	중소기업	부지매입비×45%	20	10	5	5	
		대기업	투자비×4%					
	설비투자 보조금	수도권 인접 지역	중견기업	투자비×6%	20	14	3	3
			중소기업	투자비×9%				
			대기업	투자비×6%				
		일반 지역	중견기업	투자비×9%	20	16	2	2
			중소기업	투자비×12%				
			대기업	투자비×9%				
지원우대지역	중견기업	투자비×17%	20	16	2	2		
		중소기업					투자비×22%	
	수도권 인접 지역	대기업	투자비×6%	20	10	5	5	
		중견기업	투자비×4%					
		중소기업	투자비×9%					
	일반 지역	대기업	투자비×6%	20	14	3	3	
중견기업		투자비×9%						
중소기업		투자비×12%						
지원우대지역	중견기업	투자비×17%	20	16	2	2		
		중소기업					투자비×22%	

주1) 국비 지원대상 기업의 구분(지역분류), 지원유형, 지원비율(범위) 등 세부 지원기준 및 국비와 지방비 재원부담 비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다만,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 비율은 도비·군비를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주2) 부지매입비 관련 국비 한도액이 6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은 도비·군비를 각각 50퍼센트로 함

주3) 설비투자지원관련 지역선도산업, 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기업의 경우 각각 2퍼센트 지원비율 상향 가능하되,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주4) 근로환경개선시설 추가지원 : 설비투자금액의 10%범위내에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액의 3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별표 3]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기준(제9조, 제13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억원)		
			계	도비	군비
중·대규모 이전·신설 지원	1일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20%	40	20	20
	1일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30%	60	30	30
	1일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40%	80	40	40
	1일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50%	100	50	50
중·대규모 창업기업 지원	1일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	총투자금액×20%	10	5	5
	1일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20	10	10
	1일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		40	20	20
	1일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기업		60	30	30

주1) 군에서 별도로 선정한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5%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주2)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비율 한도 상향하되,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별표 5]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기준(제10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폐특기금 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부지매입보조금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	부지매입비×50%	10
설비투자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30%	20
본사이전보조금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씩	5
임대료 보조금		(임대료+ 임대료 보증금 이자 비용)×50% 최대 5년까지 지원	5
고용 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하여 신규채용시, 1년범위내 초과인원 1명당 월70만원	10
교육훈련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하여 신규채용시,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5
이자차액보전금		변동금리 기준으로 이자율 3% 초과시, 융자기간 동안 3%한도내에서 지급	3%
물류보조금		공장가동시점으로부터 1년 범위내 제품운송비의 50%를 반기별로 지원	0.3

[별표 6]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기준(제12조, 제13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계	도비	군비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전기 등)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이고,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3%	18	9	9
	상시고용인원 70명 이상이고,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총사업비×3%	30	15	15
	상시고용인원 100 명 이상이고,총사업 비 700억원 이상	총사업비×3%	42	21	21
	상시고용인원 150 명 이상이고,총사업 비 1,000억원 이상	총사업비×3%	60	30	30

주1) 총사업비의 최대 3%까지(도비:군비=50%:50%)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총사업비에는 토지매입비, 용역비, 건축비 등을 전부 포함함.

주3)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으로 토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의 집행은 불가함.

[별표 7]

군내 기존기업의 신규투자 지원기준(제7조, 제11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계	도비	군비
군내 기존기업 신설·증설 지원	신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추가 상시고용 인원 30명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20%	20	10	10
	신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		40	20	20
	신규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추가 상시고용 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		60	30	30

[별지 제2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제4조, 제11조, 제14조 관련)

지원대상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법인(주민)등록번호	
	법인본사소재지			전화	
				팩스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대			입지유형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input type="checkbox"/> 공장 (<input type="checkbox"/>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기간	본사: 년 월(. .), 공장: 년 월(. .), 연구소: 년 월(.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 금액(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m ²)	원	
사업면적(m ²)	부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사업개시 (예정)일		
	착공(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유치시 신청시 이전	상시 신규	고용인원
설비투자금액 (A+B+C)	원		유치시 신청시 이전	상시 신규	고용인원
건축비(A)	원	시설장비구입비(B)	원	기반시설 설치비(C)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부담금	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선 군 수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임대료(□건물 □토지) 보조금 신청서(제6조, 제11조, 제14조 관련)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화 팩스	

이 전 내 역

이전 전 소재지	
이전 후 소재지	
근무인원	본사 : 명(연구소 포함)
	공장 : 명
임대내역 □ 건물 □ 토지	임대료 : 천원(원/m ²)
	임대면적 : m ²
	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 신청액(천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선 군 수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별지 제5호서식]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제7조, 제14조 관련)

지원대상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본사소재지			전화		
				E-mail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 <input type="checkbox"/> 매입	입지유형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투자유형 (이전 또는 신·증 설부분)	<input type="checkbox"/> 이 전		<input type="checkbox"/> 신 설	<input type="checkbox"/> 증 설		
	<input type="checkbox"/> 공장(<input type="checkbox"/>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기간	본사: 년 월(월(.)), 공장: 년 월(. .), 연구소: 년 월(월(.))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천원	분양(매입)금액(원/㎡)	천원			
사업면적(㎡)	부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율(%)		
이전 또는 신·증 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 설 후(後)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 투자금액(부지 +설비)	천원	이전(신·증설)전 용인원	상시고 용인원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	천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건축비(A)	천원	시설장비구입비 (B)	천원	기반시설설치비 (C)	천원	
보조금신청액	천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과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정 선 군 수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차근 지원기준」 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별지 제6호서식]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변경) 요청서(제8조, 제14조 관련)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과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업투자촉진지구지정(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1. 촉진지구의 명칭 :

2. 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위치 및 면적) :

3. 지구지정의 기본방향(변경) :

4. 대상지역 안의 인구, 산업, 토지이용현황 : 별지참조

5. 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6. 다른 지역개발 계획의 내용 및 사업 연계방안 : 별지

붙임

- 1. 위치도 및 경계를 표시한 축척 1/5,000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 2. 지적도 및 임야도
- 3.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 4.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서류 및 도면
- 5. 사업별 투자계획(개별입지)
- 6. 현황사진 등

[별지 제8호서식]

폐수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신청서(제8조, 제14조 관련)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화	
				FAX	
입 지 유 형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농공단지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투 자 유 형	<input type="checkbox"/> 수도권이전 <input type="checkbox"/> 타시도이전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증설				
사업장소재지					
기업투자내용	투자금액	원			
	부지면적	m ²	건물면적	m ²	
	고용인원	명	기존(이전)	명	
			신규채용	명	
착공일			준 공 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보조금 종류	<input type="checkbox"/> 폐수배출부과금 <input type="checkbox"/> 물류비 <input type="checkbox"/> 전기요금				
보조금 신청내역	연도별	지출비용		보조금 신청액	지원비율
	합 계	원		원	%
	년	원		원	%
	년	원		원	%
	년	원		원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7항과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6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선 군 수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9호서식]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제9조, 제14조 관련)

지 원 대 상	투자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대		입 지 유 형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투 자 부 문	<input type="checkbox"/> 공장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투자 전(前) 소재지			투자지역 소재지			
부지매입 금액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m ²)		원	
분양(매입)면적(m ²)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부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 면적률(%)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사업개시 (예정)일		
			착공(예정)일			
업 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총투자금액 (부지+설비)	천원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	천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건축비(a)	천원	시설장비구입비(b)	천원	기반시설설치비(c)	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부담금			천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과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정 선 군 수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 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시군 부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별지 제10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제11조, 제14조 관련)

지원 대상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투자 내용	신고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투자금액		천원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대	
입지유형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이전부문	<input type="checkbox"/> 공장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설립일		등록일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	총인원 : 명	신규고용 : 명	기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자체 분담금	천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선 군 수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별지 제11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제11조, 제14조 관련)

지원 대상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기업투자내용	투자완료일				
	업종(분류번호)				
	투자금액		원		
입 주 유 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 대		
입 지 유 형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input type="checkbox"/> 공장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최초 설립일		사업개시일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	유치시 인원	명	신규고용인원	명	
	신청시 인원	명	이전 후 인원	명	
교육훈련기관			총 소요액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	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정 선 군 수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별지 제12호서식]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 신청서(제11조, 제14조 관련)

(구분 : 차)

1. 기업개요				
지원대상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국내 투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
지원대상자		지분 참여비율(%)		
입주 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대	입지 유형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복귀 유형		<input type="checkbox"/> 복귀 전 부분 철수 <input type="checkbox"/> 복귀 전 전부 철수 <input type="checkbox"/> 복귀 후 전부 철수 <input type="checkbox"/> 복귀 후 부분 철수		

2. 국외 사업장 현황(관계 증명용)										
투자자명(지원대상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법인명					소재지					
업종(업태)					HS 코드					
국내 사업장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국내법인의종속회사 <input type="checkbox"/> 개인의 피투자회사				복귀직전 지분율					
지분변동 여부	<input type="checkbox"/> 변동 <input type="checkbox"/> 2년간 변동없음				지분변동사유			<input type="checkbox"/> 양도 <input type="checkbox"/> 증자 <input type="checkbox"/> 감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최초 해외직접투자일					국외 사업장 개시일					
철수 유형	<input type="checkbox"/> 청산 <input type="checkbox"/> 자산·지분양도 <input type="checkbox"/> 생산량 감축				청산·양도일					
(부분철수시) 해외사업장 생산계획	연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생산량									

1) 보조금 신청연도 기재(예: '13. 3월 보조금 신청시 '13년 기재)

3. 보조금 지원 유형				
보조금 유형	<input type="checkbox"/> 입지지원 <input type="checkbox"/> 투자지원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input type="checkbox"/> 공장 (<input type="checkbox"/>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기간	본사 : 년 월(. .), 공장 : 년 월 (. .), 연구소 : 년 월(. .)			
국내복귀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사업면적(㎡)	부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국내복귀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사업개시(예정)일	
	착공(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총투자금액 (부지+설비)	원		유치시 고용인원	명/명/명/명
설비투자금액 (A+B+C)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		
건축비(A)	원	시설장비 구입비(B)	원	기반시설설치비(C)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부담금	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p>「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과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정 선 군 수 (관인)</p> <p>강원도지사 귀하</p>				
<p>※ 첨부서류</p> <p>① 공동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3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4호) 각 1부</p> <p>② 개별서류</p> <p>-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 부분 철수 : 부분철수계획서, 부분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p>				

[별지 제13호서식]

폐광지역 투자기업 대체산업육성자금 이차차액보전금 신청서
(제11조, 제14조 관련)

신 청 인	회 사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전화, FAX	
공장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공장규모 (㎡)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 면적	공장가동 개 시 일

이차보전 지원신청내역(단위:백만원)

구 분	용 자 내 역			이차보전 지원신청액
	용자기관	용자일시	용 자 액	
시설자금				
운전자금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폐광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대체산업육성자금 이차차액 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정 선 군 수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
 1. 이차보전금 산출명세서 1부
 2. 금융기관 금융대출 확인증명서 1부

[별지 제14호서식]

폐광지역 투자기업 물류보조금 신청서(제11조, 제14조 관련)

신 청 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주소제외)			전화	
				FAX	
공 장 소 재 지			업종		
	(농공단지명:)		산업분류번호		
공장규모 (㎡)	부지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면적	공장가동개시일	
물류운송 내역	자가용 운송		영업용 운송		
신청액	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과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정 선 군 수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제품운송 거래 내역서 포함) 1부.
2. 추정재무제표,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확인원) 1부.
3. 차량등록증명서(자가운송시) 1부
4. 기타증빙서류(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1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별지 제15호서식]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제12조, 제14조 관련)

지 원 대 상	상호 및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E-mail				
사업계획 승인일		관광사업 등록일		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			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	총 인원 : 명	도내 신규고용 인원 (명)	기존 고용인원 (명)	

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	투자금액	비고
합 계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기 타		
보조금 신청액	천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정 선 군 수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협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별지 제16호서식]

사업계획서(제14조 관련)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업종(코드번호)	생산품	종업원수	자산규모(억원)		투 자 규 모
			동산	부동산	부채

2. 용지 소요내역

대지면적(m ²)	건 축 계 획 면 적 (m ²)					
	계	공장	연구소	연수동	숙소동	기타부대시설

3. 건설계획

구분/년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부지매입					
인허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4. 활용계획

--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구 분	금 액	비 고
부 지 대		
공 사 비		
기 타		
계		

* 재원 조달 : 내부조달, 외부조달 구분 표기
 * 투자 계획 : 착공일, 투자완료일 표기

6. 고용인원 계획

구 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정 규 직					

7.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년 월 일	주 요 내 용

8.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계획

--

9. 기타 세부사항(반드시 제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업 개요, 업종 및 생산품 소개 ② 최근 3년간 기업 주요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3년간 재무제표 제출 ③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제품, 생산, 수출, 전후방 산업 등 포함) ④ 국내외 시장의 수급현황 및 향후 전망 ⑤ 투자기업의 5년간 사업성 전망(투자수익률, 순현재가치 등 구체적 투자수익성 자료와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 등에 대한 내용과 관리계획 포함) ⑥ 향후 5년간 추정재무제표(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제 비용요소와 매출액에 대한 구체적 추정내용 포함) ⑦ 신청지역을 투자대상으로 선정 이유(대체 투자지역과 비교시 장.단점 포함) ⑧ 향후 5년간 지역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⑨ 기업체 자체 평가한 사업성 결과
(기본 가정 : 할인율 8%, 사업계획 대상기간은 투자개시후 5년) |
|---|

[별지 제17호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제14조 관련)

○○(주)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동 ○
○번지에 소재한 ○○을 ○○시 ○○동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동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보조금의 예
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위 치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강원도지사 귀하

(확인인)

소 속 : 정 선 군 수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18호서식]

관광사업 투자 이행각서(제14조 관련)

○○는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도 ○
○시(군) ○○동(읍면) ○○번지에 제출한 사업계획 대로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
유 없이 협약내용을 불이행하거나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정선군 기업 및 투
자유치 촉진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조례 제24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에
의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약속합니다.

- 위 치 :
- 투자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강원도지사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제14조 관련)

세부 지원기준	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 등 확인사항	적합여부
기업개요	※ 기업명,소재지 등(대상지역)	
사업영위 기간 적격 여부	※ MOU체결일자, MOU시점 1년이상 이전사업 영위여부, 사업개시일, 이전유형[전부, 일부(본사,공장, 연구소)] 등	
업종적합여부	※ 영위업종 ※ 상시고용인원 기준 완화 업종 (지역선도산업 업종 등) 해당 여부	
상시고용인원	※ MOU 및 신청서 제출 시점 1년간 월평균 인원수로 판단	
기업신용등급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결과서 검토 결과 - 협력관계 유지 및 투자적격등급 여부	
투자 효과	※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등 사업계획서상 투자계획 검토, 보조금 한도에 따른 신청여부 등 (입지지원은 이전사업장 지원대상 면적 적합 여부)	
지원비율 특례여부	※ 기업투자촉진지구 이전, 주력업종 등	
보조금 유형 및 지원 금액	※ 보조금유형, 도비, 시군비 총액으로 구분 표기	
기 타	※ 객관적인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이행 각서 등 제출여부	
최종 검토의견	※타당성분석 평가점수 등	

년 월 일

검토자 정 선 군 수 (인)

[별지 제20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제14조 관련)

□ 기업명 :

주요내용	세부항목	점수표					점수	
							1차	2차
대상기업 적격평가 (35)	1. 사업실적 (매출액 기준)	2	4	6	8	10		
	2. (상시)고용인원	1	2	3	4	5		
	3. 기업신용등급	4	8	12	16	20		
투자사업 계획평가 (40)	4. 자금조달계획 평가	1	2	3	4	5		
	5. 신규 투자금액	4	8	12	16	20		
	6. 사업성 분석	1	2	3	4	5		
	7. 투자완료 시점	2	4	6	8	10		
지역경제 파급효과 (25)	8. 신규 고용창출 인원	4	8	12	16	20		
	9. 지방재정기여도	1	2	3	4	5		
가점요소 (4)	10. 낙후지역 투자여부			2				
	11. 지역선도, 특화산업 지역집중 유치업종적합성			2				
종합평가	사업추진의 종합 적인 타당성 평가	60점미만 탈락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인)

[별지 제21호서식]

지방이전기업 관리대장(제15조 관련)

기업 개요 ①				
기업 현황	상호(대표자명)			
	이전 전(前) 소재지			
	이전 후(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연락처	전화 :	팩스 :	
	담당자	부서명 :	성명 :	휴대폰 :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생산품	
	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사업 계획 이행 현황	투자예정금액(천원)		실투자금액 (천원)	
	투자금액 미달사유			
	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	명 명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	명 명
	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착공예정일		착공일	
	설립완료 예정일		설립완료일	
	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보조금 신청 후 3년 이내 착공여부	<input type="checkbox"/> 착공 <input type="checkbox"/> 미착공		
	미착공 사유			
향후 계획 ②				

보조금 지원액 (천원)	입지 보조금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투자 보조금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고용 보조금	계획인원:	지급인원 :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교육훈련 보조금	계획인원:	지급인원 :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특이
사항
③

작성요령

- 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이전기업 사후관리 현황조사 보고서(제15조 관련)

기업개요 기업현황	회사명					대표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연락처	전화 :				팩스 :				
	담당자	부서명 :			성명 :			HP :		
	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생산품				
	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매출액(원)					수출액(\$)				
사업계획 이행현황	보조금 지원 유형	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								
	투자예정금액 (천원)					실투자금액 (천원)				
	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	1차 계획				1차 실적				
		2차 계획				2차 실적				
		3차 계획				3차 실적				
	투자금액 미달사유									
	상시고용 예정인원	1차	명	1차	명	상시고용 인원	1차	명	1차	명
		2차	명	2차	명		2차	명	2차	명
		3차	명	3차	명		3차	명	3차	명
	신규채용 예정인원	3차	명	3차	명	신규채용 인원	3차	명	3차	명
	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착공예정일					착공일				
설립완료 예정일					설립완료일					
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입지계약 후 1년6개월 이내 착공여부	<input type="checkbox"/> 착공				<input type="checkbox"/> 미착공					
미착공 사유										

보조금 지원액 (천원)	입지지원 (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투자지원 (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	계획인원:	지급인원 :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개 정 이 유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2014. 3. 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73호(2014. 4. 16.) 등에 따라 보조금 부담 비율의 정비 등 현실에 맞는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기업이전의 요건을 정의함(안 제2조)
-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규칙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 폐광지역 투자에 대한 규칙을 정함(안 제10조, 제11조)
- 관광사업 투자유치 지원 규칙을 정함(안 제12조)
- 부담금의 분담, 보조금의 신청, 사후관리,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규칙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